#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 사 보 고 서

2026. 4.

정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10., 송기헌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4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 (2025. 4. 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 4. 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2차 정무위원회 (2026. 4.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송기헌의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몰군경의 유족 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 기 도)

□ 현행 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체계는 ① 신체적 상이를 입은 상이유공자와 ② 그렇지 않은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의 유가족'을 구분하여, 상이유공자[1]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그 진료비용[2]을 국가가 부담(면제, 국비진료)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3] 비상이유공자[4] 및 유공자의 유가족은 보훈병원 진료 시 그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진료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감면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다만, 비상이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유공자의 유가족 중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그 진료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의료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한편, 시행령 및 부령[5]은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의 유가족의 진료비용

---

1)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신체검사에서 일정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를 포함)을 의미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 전체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급하는 비용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비용을 의미함.

3) 다만, 신체검사에서 일정 등급 미만 결정·판정을 받은 사람은 상이처(등록사유) 외 질병에 대하여는 진료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시행령), 그 밖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상이를 입었으나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에 대하여는 상이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특별공로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감면율은 60%를 원칙으로 하되, 참전유공자(90%) 및 재일학도의용군인(보훈병원의 경우 100%), 5·18민주화운동희생자(50%) 및 그 배우자 또는 유족(30%)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음.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최초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 진료에 대하여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1986년 제주지역에 위탁병원이 처음 지정된 이래, 1991년 상이유공자는 신체적 상이로 인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보훈병원 이용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상이유공자에 대하여만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용을 감면하였고, 이후 재정여건 및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여 비상이유공자와 유공자의 유족 일부에 대해서도 그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음.

○ 2009년에는 고령으로 인한 거동 불편 등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및 보상금 수급 선순위 유족에 대하여 위탁병원 진료 시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23년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

○ 한편,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의 근거리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5) 감면율과 관련하여,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은 시행령에서 그 범위만을 정하고(면제하거나 100분의 60의 범위, 참전유공자의 경우 100분의 90의 범위) 구체적인 수치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음.

□ 보훈대상자의 진료비용 감면율과 관련하여서는, 의료지원 대상자가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이유공자와 그 외 유공자 등(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 유가족) 간 차등을 두고 있는데, 상이유공자의 경우 진료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그 외 유공자 등에게는 60%를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비상이유공자 중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에는 보훈병원 진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율을 90%로 하고 있는 등 일부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 유족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음.[6)]

□ 개정안은 ① 유공자의 유족 중 위탁병원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의 연령 제한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② 현재 보훈병원 진료비용의 60%를 감면받고 있는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 유가족의 감면율을 90%로 상향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유공자의 유족 중 위탁병원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7)] 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

6)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희생자(50%) 및 그 유족(30%)은 다른 비상이유공자 및 그 유족의 감면율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음.

7) 유족 중 보상금(6·25전몰군경자녀수당 포함)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사망 또는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과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임(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공자는 제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분할 지급받는 사람은 그 중 1인에 한함.

① 연령 제한 요건과 ② 보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연령 제한을 “7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것이어서, 이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유공자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감면대상 요건 중 연령 제한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고령인 유족이 주거지 등으로부터 보다 근접한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개선되어 그들의 의료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여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위탁병원 감면대상 범위 확대는 재정여건, 진료 지원 비대상자와의 형평성 및 보훈의료정책환경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 따른 대상 확대 인원은 18,984명(2026년 기준)으로, 이로 인하여 국가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위탁병원 진료비용이 연간 약 52억원(향후 5년간 약 25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행 위탁병원 지원 체계에서도 위탁병원 진료비는 편성된 예산을

상회하여 타 사업 예산으로부터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 재원 확보가 사전에 준비될 필요가 있음.

○ 둘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만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탁병원 진료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 본인 및 유공자 유족과의 의료지원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위탁병원 의료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 감면율 인상 및 감면 범위 확대, 진료 수준 향상 등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추가적 재정부담능력, 한정된 재원의 배분 및 정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개정안을 수용하려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의 연령 분포를 고려하여 볼 때, 연령 기준을 폐지하더라도 개정안과 비교하여 추가되는 인원은 3,059명, 추가 예산은 연간 약 8억원이라는 점에서, 연령 기준 자체를 폐지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8)]

8)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으로 최초 편입(2009년)되었을 당시에는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2023년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

□ 현행법[9]은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용 감면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100분의 60의 범위(단,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의 경우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하여 감면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10]

○ 이에 대하여, 감면율의 범위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률의 상한인 100분의 60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비하여 낮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4건의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율 범위를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현재도 보훈병원 진료비의 90%를 감면받고 있으므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감면율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 외에 다른 변화는 없음.

---

9) 개정안이 발의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함.

10) * **(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진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또한, 비상이유공자 중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에는 현재도 보훈병원 진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따른 감면율 상향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개정안은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용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예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중 감면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감면율 범위와 같이 가변적인 사항은 재정 여건 상황과 보훈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11]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추가적 재정부담능력 및 전체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체계 내 비례성 등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 유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을

11) [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 유족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변화 ]

| 구분 | 1974 | 1985.1. | 1990.1 | 1992. 7. | 1998.7. | 2002.7. | 2005.7. | 2018.1.~ |
|---|---|---|---|---|---|---|---|---|
| 국가유공자 유가족 | 유족 50%<br>가족 40%<br>(시작) | 좌동 | 60%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무공·보국수훈자 | – | 50%<br>(시작) | 60%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참전유공자 | – | – | – | 30%<br>(시작) | 50% | 좌동 | 60% | 90% |
| 5·18유공자 및 유가족 | – | – | – | – | – | 30%~60%<br>(시작) | 좌동 | 좌동 |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 – | – | – | – | – | – | 60%<br>(시작) | 좌동 |

90%로 상향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는 연간 2,165억원 상당(5년간 약 1조 82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재정 여건 및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유공자 및 유족은 개정 여부와 무관히 현행 감면율(30%~60%)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데,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들과 개정안에 따라 90%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되는 유공자들 간의 지원 격차가 발생 또는 확대될 것이므로, 두 그룹 간에 이러한 감면율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감면율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현행 60%인 그 외 유공자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90%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 및 개정안의 문언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법 개정 필요성 여부 또는 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진료비용 감면율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에서 감면율을 상향하는 것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감액” 하도록 하여 감면율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어, 결국 그 문언상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감면율의 위임 범위는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 따라서, 법률의 개정 외에도, 시행령에서 직접 감면율을 상향 규정하는 방안과 입법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에서”와 같이 하한을 정하여 위임하는 방식의 대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의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